

#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길영 위원장님!  
그리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  
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상욱 의원입니다.
-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생태환경 보전과 녹지 확보를 위하여 지정·관리되고 있으나, 장기간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당초 지정 목적을 상실한 지역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여건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.
- 특히 역세권 주변의 훼손지는 도시계획적 활용 가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인 규제로 인해 역세권 활성화 사업 등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한계가 있으며,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수단 또한 미흡한 상황입니다.
-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하여 훼손지 복원과 역세권 연계 개발 등 계획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, 난개발을 예방하는 등 체계적인 도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합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 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 
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